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심 의 사 항	0 0 0	<p>지금부터 2013년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 심의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0 0 0	<p>오늘 안건은 000000에 대한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으로 청구인 000님은 0000년 00월 00일 서울시 지하도상가 0000년, 0000년 대부요율, 서울시 지하도상가 0000년, 0000년 감정평가 결과, 지하도상가 대부요율 결정근거자료 및 지하도상가 대부요율 결정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에 000000에서는 0000년 0월 0일 청구건 중 지하도상가 대부요율 결정기관 및 000상가 0000년, 0000년 감정평가 결과를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근거 및 사유는 지하도상가 대부요율 및 결정 근거자료의 경우 서울시 비공개 대상문서에 따른 것이며, 공개한 나머지 상가를 제외한 타상가의 감정평가 결과의 경우는 해당상가별 사업자의 경영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하에 결정하였습니다.</p> <p>그럼 지금부터 000000부서의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p>
	0 0 0	<p>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 청구건 중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상가 수탁법인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다른 수탁법인의 관한 정보는 경영상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관련문서의 비공개 자료라는 근거로 부분공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p>

심 의 사 항		<p>그러나, 현재 정보공개에 관한 서울시 정책기조는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미 이 관계에 있어 입찰이 진행되고 마무리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한 대부요율의 경우도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p>
	0 0 0	<p>당초 서울시에서는 예정가격이 추측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문서로 비공개를 결정했는데, 그럼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상위까지 결재를 해서 의견이 내려온것이지 않습니까?</p>
	0 0 0	<p>이것은 0000년도 00월에 대부요율이 재조정이 되어졌는데, 당시에는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정보공개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이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요율에 관해 각 상가별로 요청을 하면 각 수탁법인별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의무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또한 이미 입찰 진행시 예정가격은 각 수탁자별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p>
	0 0 0	<p>그럼 이미 이 사항은 지나간 일이고,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p>
	0 0 0	<p>원칙적으로는 그렇고, 대부요율, 전체 임대료 등 모든걸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판단됩니다.</p>

심 의 사 항		<p>또한 이 요구한 자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향후 문제점 등이 상존하다고는 판단됩니다.</p>
	0 0 0	<p>그럼 여기서 오늘 심의안건이 총3가지 인데, 우선 먼저 지하도상가의 0000년, 0000년 대부요율에 대해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 할지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p>
	0 0 0	<p>그전에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이게 대부요율이라고 하는데, 대부요율은 대부료와 똑같은 의미죠? 근데 지금 현재 이분이 청구한 사항을 보면 각 상가별로 0000년, 0000년 대부료가 얼마인지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요율을 곱하고 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예가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대부료 자체는 아니죠. 예가를 주고 최고 입찰을 한 업체를 선정한거 아닙니까?</p>
	0 0 0	<p>최대 000%까지 인가요?</p>
	0 0 0	<p>어쨌거나 예가하고 대부료는 법률적으로 다른건데, 예가는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 하나를 제시해 놓은 거고, 이것에 대한 최소 몇 프로가 되어야 한다면지 이런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가인데, 이분이 청구한 자료는 대부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않은거라 생각됩니다.</p> <p>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대부하는 기관이 대부료를 정할 수 있고, 즉 1000분의 50으로 정하게끔 되었고, 그것도 의미가 없는게 입찰을 할때는 최고가 입찰이지요?</p>

심 의 사 항		<p>여기서 정한 대부료 자체가 적용이 안됩니다. 입찰할 때는 입찰 가격이 대부료가 되어버리니깐요. 그렇다면 항상 상가마다, 입찰할 때마다 대부료라는 것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보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p>
	0 0 0	<p>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부료는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요율을 공개해달라는 것인데, 대부료가 재산가액(감정평가액) 곱하기 대부요율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대부요율 자체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 산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대부료가 선정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p>
	0 0 0	<p>이 첨부자료를 보면 0000년에 인상이 되었고 이번에 0% 인상이 된거지요?</p>
	0 0 0	<p>000상가는 이번에 0%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p>
	0 0 0	<p>현재 이 정보공개에 취지는 대부요율이 타상가에 비해 정확하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p>
	0 0 0	<p>결국에는 우리가 입찰에 부치면서 예가기준이 왜 인상이 되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인가요?</p>
	0 0 0	<p>입찰을 하기전에 이미 인상된 사항이고, 인상된 대부요율에 비례해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p>

심 의 사 항	0 0 0	<p>첫 번째로는 지금 아주 문헌적으로 정보공개 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없는것입니다. 낙찰가액이야 모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p>
	0 0 0	<p>그럼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p>
	0 0 0	<p>예, 그렇습니다.</p>
	0 0 0	<p>예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정한 상가별 대부요율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요?</p>
	0 0 0	<p>대부요율도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이 되었는지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p>
	0 0 0	<p>대부요율, 감정평가 결과, 근거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p>
	0 0 0	<p>우리 개념을 보면 낙찰가액을 가지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대부요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입찰에 부칠때에 기준가격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면 달리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기관이라는 것도 서울시가 아니라 입찰에 응찰한 해당 당사자 또는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0 0 0	<p>청구인이 요청한 취지는 입찰 하기전에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대부요율로 낙찰된 대부료가 아니라 낙찰전 이미 부과 되었던 대부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p>

심 의 사 항	0 0 0	입찰전에 대부요율을 원하는 것입니다
	0 0 0	입찰전에도 입찰을 하지 않았나요?
	0 0 0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0 0 0	그럼 대부요율은 우리가 매년 새로 산정을 합니까?
	0 0 0	아닙니다. 대부요율은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때 새로운 입찰을 위해 다시 산정을 합니다.
	0 0 0	그럼 이게 최초로 적용된 대부요율 입니까?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그럼 0000년 대부요율은 수의계약 당시의 대부요율을 원하는 것입니까?
	0 0 0	그렇습니다.
	0 0 0	이 두 자료는 공개를 해도 비교대상이 되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0000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0000년은 입찰로 진행된 사항이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0 0	문서에 의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실체에 의하면 이게 달라진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공인된 기관을 통해 대부요율을 결정 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기에,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 의 사 항	0 0 0	그럼 우리는 입찰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위해 용역을 준것이고, 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입찰이 진행되어진 것이네요.
	0 0 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 청구사항으로는 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0 0	청구인이 입찰을 위해 참고한 자료가 있냐고 요청을 한다면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겠지만, 이 청구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0 0	공단의 경우 입찰하기전 예가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가를 공개하지요?
	0 0 0	공개합니다.
	0 0 0	그럼 우리가 문헌상으로 해석을 해서 판단할지 청구인의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0 0	이의신청 사유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이 청구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0 0	그럼 단순 이의신청 취지에 따라 우리가 공개를 결정하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0 0 0	그렇습니다.

심 의 사 항	0 0 0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우 대부료가 재산가액 곱하기 대부요율에 따라 결정 됩니까? 그 대부요율은 각 상가마다 다릅니까?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상가활성화 정도가 유동인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0 0 0	그럼 그런 요인들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상가활성화 정도 등을 감정평가에 반영하고, 대부요율은 일률적으로 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0 0 0	현재 세부적인 용역결과는 감정평가사에서 책임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요율에 각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감정평가액을 곱해서 최종 대부료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0 0 0	근데 공유재산의 경우 이런식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할 때 이런것들이 전부 반영되서 임대료가 산정이 되어서는, 공유재산은 많은 부분 한계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0 0 0	그렇다면 감정평가액에 모든 것을 반영하기 힘든 부분에서 대부요율을 선정에 있어 용역을 통해 결정했다는 얘기는 근거가 명확한 사항입니다.
	0 0 0	그럼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요율도 공개가 된 사항입니까? 감정평가결과서까지도 공개하였습니다.

심 의 사 항	0 0 0	현재 청구인의 이의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000상가가 타상가에 비해 불공정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정성 확인을 위해 비료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의신청 취지를 밝힌 사항입니다.
	0 0 0	그럼 청구인은 용역 감정평가결과보고서를 원하는 것입니까?
	0 0 0	네, 그렇습니다.
	0 0 0	대부요율을 보면 그렇게 큰 차별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0 0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는 것 같습니다.
	0 0 0	인접한 상가에 비해 많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0 0	그럼 첫 번째 사항에 대해 공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0 0 0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보공개 결정을 떠나 우리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0 0	관련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0 0 0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은 문헌상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청구내용으로는 우리가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 의 사 항	0 0 0	현재 우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 들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 0 0	정보공개심의회에 있어 청구인의 취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소속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으로 가정해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할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심의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000상가를 공개하고 타상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0 0 0	그럼 감정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우리 기관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앞 표지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제3자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0 0 0	근데, 이런 사항은 타 기업이 결과서를 보고 영업노하우를 쉽게 취득할까봐 작성된 사항 같습니다.
	0 0 0	그럼, 정보공개에 취지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개하라는 대원칙하에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0 0	법령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면 다 공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0 0 0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기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알고 있는게 오히려 더 공정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특정인만이 갖고 있는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 의 사 항	0 0 0	이 자료 공개가 특정인에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 나요?
	0 0 0	이 자료는 과거자료이고, 향후 입찰이 진행된다면 이 자료가 향후 새로운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0 0 0	저도 이 자료가 향후 입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 지는 않습니다.
	0 0 0	그럼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0 0	우리가 어떤 용도로 제작했던간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가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 다.
	0 0 0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같은 입찰이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 인거 같습니다.
	0 0 0	아무리 반복적으로 입찰이 진행 된다고 하더라도 향 후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런 자료는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 공정한 입찰을 위해 공개는 필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0 0 0	저도 이 자료가 새로운 입찰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 0 0	이 자료를 공개시 감정평가기관에 영향은 없습니까?
	0 0 0	자료 공개시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 니다.

심 의 사 항	0 0 0	앞으로 입찰이 계속 진행 되는 것인데, 감정평가기관이 공개될 시 대규모 로비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이 자료 자체가 영업노하우 중 하나라고도 판단되기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0 0	근데 이걸 누군가가 보게끔 만든 자료인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작성자의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0 0	제3자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권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있습니다.
	0 0 0	기본적으로 제3자의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감정평가 기관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 0 0	저는 그 의견하고는 다른데, 이 용역보고서의 경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산출근거를 받은 자료이기에 이 자료의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0 0 0	정보공개 원칙적인 큰 취지는 모든 문서는 공개를 하기 위해 만든 문서라는 대원칙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0 0	맞습니다. 정보공개법 재정 취지가 아주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공개를 하라는 원칙하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0 0 0	향후 이 문제가 행정소송이나 심판까지 갔을 때 우리에게 큰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 의 사 항	0 0 0	부적절한 비공개로 우리가 소송이나 심판에서 졌을때 공단의 데미지는 더 클 것 같습니다.
	0 0 0	소송 진행 시 비공개 사유 입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정당하게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0 0	현재 이 자료 자체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미 일부 공개된 내용도 있고 해서 공개를 결정해도 무방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0 0	그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한 정보공개 본안심리 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기에 청구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부분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0 0 0	그럼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비공개부분에 대한 공개로 심의회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0 0 0	모두 동의하십니까?
	0 0 0	예, 동의합니다.
0 0 0	그럼 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